

임예진 관세법(2023년 대비) 개정사항 (3)

- 관세법 법률 2022. 12. 31. 개정 [시행 2023. 1. 1.]
- 관세법 시행규칙 2022. 12. 31. 개정 [시행 2023. 1. 1.]

* 공지사항

관세사 시험은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1월 1일 시행 : 1차, 2차 모두 적용.

4월 1일 시행 : 2차에만 적용됨. (1차 시험에는 해당 없음)

7월 1일 시행 : 1차, 2차 모두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 개정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2022년 9월 개정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직 반영하지 못한 분들도 본 개정 자료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 관세법 시행령은 2023년 2월 개정될 예정입니다.

1차 p.15 / 2차 p.17 : 1. (3) 수정

(3)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기한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① 토요일 및 일요일
- ②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③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1차 p.20 / 2차 p.22 : 1. (2), (3) 수정

(2) 공시송달 사유 및 효력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상기 (1)의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 ①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 ②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③ 납세의무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공시송달 방법

상기 (2)에 따른 공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기 ①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 ① 관세법 제327조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게시하는 방법
- ② 관세청 또는 세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③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④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1차 p.28 / 2차 p.28 : 5. 수정 / 5. 관련 시행규칙 박스 수정 → 2022년 9월 개정

5/ 과세환율 [법 제18조]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법 제17조(적용 법령)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외국환매도율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과세환율 [규칙 제1조의2]

①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②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하기 ②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대고객(對顧客) 전신환매도율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다만,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고시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단서 삭제
세부 결정방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충족요건 등	세부 결정방법 등

1차 p.92, 93 / 2차 p.63, 64 : 5-1. (1), (2), (3), (4), (6) 수정

5-1/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자료 등 제출 [법 제37조의4]

(1) 특수관계자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요구

세관장은 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범위,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객관적인 증명자료의 제출요구

세관장은 상기 (1)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가격결정자료에서 제30조제1항 각 호(가산요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합산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자료제출 기한

상기 (1)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자료 또는 상기 (2)에 따른 증명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법 제31조부터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상기 (3)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6)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시정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

세관장은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법 제27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차 p.101 / 2차 p.72 : 2-1. (5) 수정

(5)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상기 (4)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후 상기 (1)과 (2)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제42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부당한 방법으로	부정한 행위로

1차 p.102 / 2차 p.73 : 3-1. (2) 수정

(2) 경정청구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고납부한 세액이	신고납부한 세액, 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이

1차 p.109 / 2차 p.81 : 7. (2) 수정

(2)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기 (1) ②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부당한 방법	부정한 행위

1차 p.237 / 2차 p.211 : 2. 수정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상기 1. ①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15만원	20만원

1차 p.238 / 2차 p.211 : 3. (2) 수정 → 2022년 9월 개정

(2) 기본면세범위

상기 (1)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상기 (1) ①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상기 (1) ③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하고, 법 제196조 제1항 제1호 단서(입국장 인도장) 및 법 제196조 제2항(입국장 보세 판매장)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미화 600달러	미화 800달러

1차 p.239 / 2차 p.212 : 3. (3)의 표 수정 → 2022년 9월 개정

구분	면세한도		비고	
술	2병		2병 합산하여 2리터(ℓ)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담배	궐련	200개비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ml)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향수	60밀리리터(ml)			

개정 전	개정 후
1병	2병
1리터(ℓ)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병 합산하여 2리터(ℓ)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1차 p.263 / 2차 p.238 : 1.의 (2) 관련 시행규칙 표 수정

1.의 (2) 관련 시행규칙

감면율 [규칙 제46조 제4항]
<p>상기 1. (2)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의 구분과 같다.</p> <p>상기 1. (1) ③에 따른 물품: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규칙 제59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50

개정 전	개정 후
2022년	2023년

1차 p.282 / 2차 p.257 : 1. (1) 수정

(1)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 ①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 ②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1차 p.286 / 2차 p.261 : 1. (1)의 ① 수정

-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차 p.287, 288 : 6. 전체 수정 [* 4.1. 시행되는 규정으로 1차 시험은 해당 없음]

6. 비밀유지 [법 제116조]

(1) 비밀유지 원칙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관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①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이나 관세법에 대한 소추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②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③ 세관공무원 상호 간에 관세를 부과·징수, 통관 또는 질문·검사하는 데에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④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⑤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급부·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심사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 ㉠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 그 밖에 급부·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⑥ 상기 ⑤의 ㉠ 또는 ㉡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 ⑦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

상기 (1)의 ⑤ 및 ⑥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과세정보 제공 요구

상기 (1)의 ① 및 ④부터 ⑦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관세청장 또는 해당 세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4) 과세정보 제공 거부

세관공무원은 상기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위반되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5) 과세정보 제공 업무 대행

관세청장은 상기 (1)의 ⑤부터 ⑦까지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법 제322조 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과세정보 제공 업무를 위한 기초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6) 과세정보 비밀유지

상기 (1)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상기 (5)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상기 (1)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상기 (5)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공무원 의제

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또는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1차 p.455 / 2차 p.428 : 4. (1), (3) 수정 → 2022년 9월 개정

(1) 입국장 보세판매장 판매한도

상기 1. (2)에 따라 설치된 입국장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에게 물품(술·담배·향수는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때에는 미화 800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하며, 술·담배·향수는 규칙 제48조 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

(3) 입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인도장이 동일한 입국경로에 함께 설치된 경우

상기 (1) 및 (2)에도 불구하고 상기 (1)에 따른 입국장 면세점과 상기 (2)에 따른 입국장 인도장이 동일한 입국경로에 함께 설치된 경우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술·담배·향수는 제외한다)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물품(술·담배·향수는 제외한다)을 합하여 미화 800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하며, 술·담배·향수는 규칙 제48조 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미화 600달러	미화 800달러

1차 p.431 / 2차 p.403 : 6. (4) 삭제

1차 p.461 / 2차 p.434 : 1. (5) 삭제

(4) 보세판매장 특허기간 [법 제176조의2 제5항]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상기 (1)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5) 보세판매장 특허기간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법 제176조(특허기간) 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1차 p.461 / 2차 p.434 : 1. (6) 수정

(6) 특허 갱신

상기 (1)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한 차례당 5년 이내로 한다.

1차 p.482 / 2차 p.455 : 1. (6) 수정

(6) 준용규정

상기 (5)에 따른 세관장의 외국물품의 매각에 관하여는 법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치기간이 지나면”은 “매각요청을 접수하면”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 및 제209조 제1항 중 “외국물품”은 각각 “매각요청물품”으로 본다.

1차 p.487 / 2차 p.462 : 1. (1)의 ⑥ 추가

(1) 매각대상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 ① 살아 있는 동식물
- ②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 ③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 ④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 ⑤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
- ⑥ 법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 제4호 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한다)

1차 p.490 / 2차 p.465 : 2. (1) 수정

(1) 매각 전 통고

세관장은 상기 1. (1)에 따라 외국물품을 매각하려면 그 화주 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외국물품을

1차 p.494 / 2차 p.469 : 1. (1) 수정

(1)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반출통고

세관장은 상기 3.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법 제208조 제1항 제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 등에게 장치 장소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1차 p.494 / 2차 p.469 : 1. (3), (4) 신설

(3) 강제징수 및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법 제208조 제1항 제6호의 물품이 법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관세 및 체납액(관세·국세·지방세의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총당금으로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4) 국고귀속

상기 (3)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기한 내에 관세 및 체납액 총당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유찰물품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1차 p.539 / 2차 p.509 : 2. (3) 수정

(3) 세관장의 통보 및 통관보류·유치 요청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상기 (2)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수출입신고된 물품
- ②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
- ③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
- ④ 보세운송신고된 물품
- ⑤ 법 제141조 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
- ⑥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1차 p.540 / 2차 p.510 : 2. (5) 수정

(5) 세관장의 조치 (통관보류·유치 또는 통관허용·유치해제)

상기 (3) 또는 (4)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상기 (3) ⑥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 ①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 ②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
- ③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
- ④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
- ⑤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
- ⑥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1차 p.540 / 2차 p.511 : 2. (7) 수정

(7) 직권 통관보류·유치

세관장은 상기 (3)에 따른 물품이 상기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상기 (3) ⑥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차 p.556 / 2차 p.526 : 1.의 (1) 관련 시행령 박스 중 영 제246조 제6항 수정

→ 2022년 9월 개정

수출환율 [영 제246조 제6항]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외국환매입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1차 p.624 / 2차 p.590 : 7. 전체 수정

7. 명의대여행위죄 등 [법 제275조의3]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
- ②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

1차 p.625 / 2차 p.591 : 9. (1)의 ④ 수정

- ④ 법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법 제275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차 p.627 / 2차 p.593 : 1. (1) 수정

(1)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7조의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 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7조의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차 p.597 : 3. 신설 [* 4.1. 시행되는 규정으로 1차 시험은 해당 없음]

3.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법 제277조의3]

(1)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비밀유지) 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상기 (1)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차 p.625 : 3. (10), (11), (12) 신설 [* 4.1. 시행되는 규정으로 1차 시험은 해당 없음]

(10)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

관세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가공·분석한 데이터(이하 “관세무역데이터”라 한다)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법 제116조(비밀유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내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내에서 관세무역데이터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무역데이터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① 국회의원
- ②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
- ③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 ④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 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1) 비밀유지

상기 (1)에 따라 열람·교부된 통계(상기 (2)에 따라 공표된 것은 제외한다), 상기 (3)에 따라 열람·교부된 통계자료, 상기 (4)에 따라 교부된 통계 및 상기 (10)에 따라 제공된 관세무역데이터를 알게 된 자는 그 통계, 통계자료 및 관세무역데이터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세부사항 규정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상기 (1)에 따른 통계, 상기 (3)에 따른 통계자료 및 상기 (4)에 따른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 절차와 상기 (10)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차 p.670 / 2차 p.631 : 9. 신설

9.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법 제326조의2]

(1)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 등의 제한

세관장은 납세자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요구

세관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관세, 내국세등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부사항 규정

상기 (2)의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체납한 횟수와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을 정하는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요구 철회

세관장은 상기 (1) 또는 (2)의 요구를 한 후 해당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징수한 경우 즉시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5) 주무관청의 의무

해당 주무관청은 상기 (1) 또는 (2)에 따른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즉시 관할 세관장에 알려야 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차 p.694 : 1. 수정

1. 환급신청기간 [법 제14조 제1항]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 ①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補正)
- ②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 ③ 법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

개정 전	개정 후
2년	5년

2차 p.703 : 2. (1) 단서 삭제

(1) 자진신고 [법 제21조 제4항]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 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정산통지를 받은 자는 상기 1.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후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이 부족하게 정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① 상기 1. (4)에 따라 세관장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징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 ② 「관세법」 제1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세조사의 통지를 한 경우
- ③ 「관세법」 제1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10조 제2항(납세자 권리현장 교부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시작한 경우